

2025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

농촌지역에 이주한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등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, 경영·마케팅, 창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률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촌의 활력 증진

I. 추진방향

- 농촌지역에 이주한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등에게 관심 있는 분야의 작목 재배기술 등을 선도 농업인(농업법인) 또는 성공 농업(귀농)인 등으로부터 영농기술 습득, 정착과정 상담, 경영기법 및 창업과정 등 연수
- 영농 초기의 경험 미숙 등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
- 농촌지역의 조기 적응은 물론, 농산업분야 창업(일자리 창출) 시,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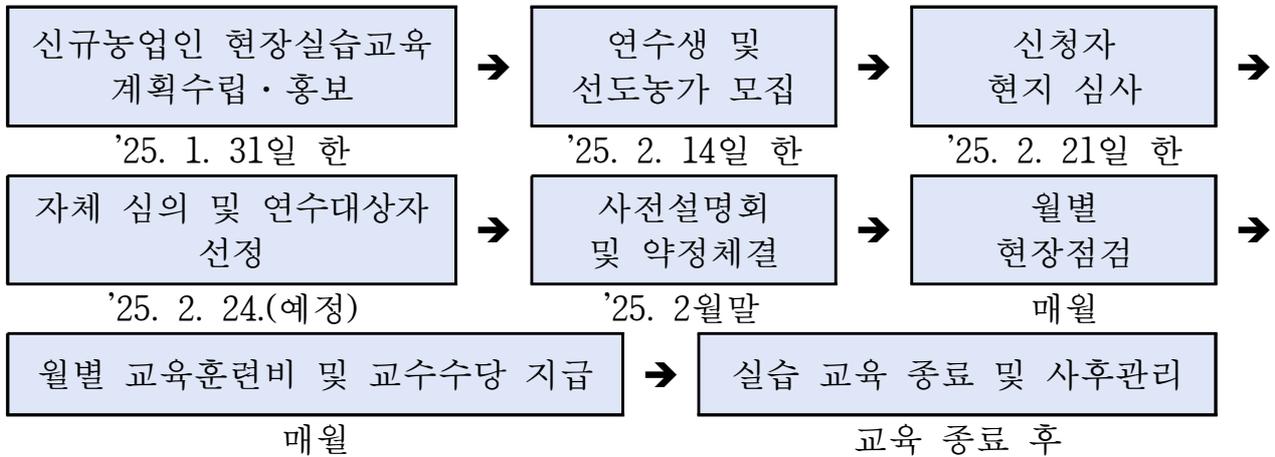
II. 근거법령

- 농촌진흥법 제19조(교육훈련사업의 실시), 제20조(교육훈련과정 등 연구·개선), 제21조(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), 제25조(정부의 재정적 지원)

III. 사업개요

- 사업기간: 2025년 3월 ~ 11월 (기간 중 5개월)
- 사업량: 3개팀 6명(연수생 3명, 선도농가 3명)
- 사업비: 18,000천원(국비 9,000 도비 9,000)
 - 산출기초: 1,200천원/월(20일, 160시간 기준)×3개팀×5개월=18,000천원
 - 연수생 800천원/월, 선도농가 400천원/월 (20일, 160시간 기준)
- 사업내용: 작목 중심, 선도 농가 협력 현장실습 지원 등

□ 추진 체계



IV. 자격요건

□ 자격요건

【 연수생 】 ※ 5가지 조건 중 1가지 조건이라도 해당되면 대상자

- 농식품부 2025년도 「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」 신청자
-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
-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
-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(귀농 여부 및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)
- 예비 귀농인(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하고 관내 지역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)

【 선도 농가 】 ※ 아래 자격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면 신청 가능

-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,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, ICT(정보통신기술) 활용 농가·우수 농업법인,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 농장(WPL), 농업명인, 농업 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
 -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,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(선정 시 농촌진흥사업 시범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우대 가능)
 -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(단, 연수생이 초보 단계의 귀농인인 경우 3년 이상 경력의 정착 귀농인도 선도농가로 선정 가능)
- ※ 해당 시군에 연수 관심분야의 선도 농가가 없거나 연수희망자가 다른 지역의 맞춤형 연수를 원할 경우, 연수받고자 하는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 (확인)한 선도농가 실습장에서 연수 가능

V. 운영 방법

- (필수) 연수생 희망 작목별 선도 농가 협력 현장실습
 - ※ 단순노동(작업)을 지양하고 학습지원, 기술이전, 창업역량 강화에 역점 추진
- (선택) 오리엔테이션, 간담회, 평가회, 자율 학습조직, 자가 영농실습 등
- 현장실습교육 기간의 탄력적 운영: 연간 5개월, 일 8시간, 월 160시간 이내
 - 자가영농 실습: 일 4시간, 월 8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 담당자 및 선도농가와 협의하여 인정 가능
 - ※ 자가영농 하는 날에도 반드시 선도농가 실습을 병행하여야 함
 - (예) 1일 8시간을 자가영농 오전 4시간, 선도농가 실습 오후 4시간으로 수행
- 주 작목+부 작목 연수 가능, 선도 농가 및 연수생 복수 지원 가능
- 잔여 실습 기간을 우수 실습 농가 및 차순위 실습 농가에 배정 가능
- 1명의 선도 농가에 2명의 연수생이 현장실습 가능(3명 이상 연수는 불가)
- 1명의 연수생이 2명의 선도 농가에서 순차적 실습 가능(연수 기간 중복 불가)
- 현장실습 보고서(*붙임 8)를 월 1회 이상 e-HRD 시스템에 등록

VI. 사업 신청

사업 신청

- 신청기간: 2025. 2. 3.(월) ~ 2. 14.(금) 18:00까지
- 신청방법 및 장소: 방문접수 (서귀포농업기술센터 2층 농촌자원팀)
- 제출서류

【 연수생 】

-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연수신청서(*붙임 3) ※ 개인정보 이용동의 포함
 - ※ e-HRD 시스템에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(*붙임 4) 입력
- ② 보안서약서(*붙임 8)
- ③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(최근 5년 이내 해당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내역 및 이주 동반 가족 수를 포함)
- ④ 귀농 교육 및 영농교육 이수 확인증(교육 수료증 등)
- ⑤ 영농사실 및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농지대장,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, 임대차계약서(임차등기 필) 등 관련 서류

【 선도 농가 】

-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(*붙임 5) ※ 개인정보 이용동의 포함
- 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(*붙임 6)
 - ※ 운영계획서: 연수시행자의 주작목 및 기술현황, 실습 사항, 교육의 주요 내용 및 목표, 목표의 기대효과를 포함하여 작성
 - ※ e-HRD 시스템에 선도농가 학습지원계획서(*붙임 7) 입력
- ③ 보안서약서(*붙임 8)
- ④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선도농가 선정기준(*붙임 1) 증빙자료

□ 사업대상자 선정

【 연수생 】

- 연수대상자 선정을 위한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수대상자 선정
 - ※ 연수대상자 선정 시 자체심의회에서 선정 가능
- 연수대상자 선정 시 다음 대상을 우대할 수 있음
 - 농식품부 2025년도 「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사업」 신청자
 - 청년농업인(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2조 1항의 청년농업인)
 - ※ “청년농업인” 이란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신규 또는 부모의 농업을 승계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농업인을 말한다.
 - 여성농업인
- 연수대상자 선정은 연수시행자(선도농가)와의 약정체결을 통해 최종 선정
- 연수생은 안전을 위해 (농업인) 안전 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
 - ※ 가입비용은 연수생 부담

【 선도 농가 】

- 선도 농가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정기준(*붙임 1)에 의해 최종 선정
- 선정된 선도농가와 연수생 간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추진
- 연수생과 선도 농가의 관계가 배우자,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과 형제 자매인 경우에는 약정 불가
- 약정체결은 3~7개월을 원칙으로 하되, 연수생 및 선도 농가 동의하에 연수 희망 시 예산을 고려하여 연장 약정 가능

□ 연수생 및 선도 농가 관리

- 연수생 선정 및 선도 농가 현장실습 교육장 지정 완료 후 약정체결 전 선도 농가가 제출한 연수 운영계획서, 현장실습 교육장 관련 각종 정보자료와 연수생이 제출한 연수신청서를 서로 교환·열람하도록 하여 사전 충분한 판단 기회 제공으로 약정체결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

※ 일시·장소를 정하여 「사전설명회」 개최(필수)

- 약정기간에 약정 쌍방의 약정 이행 여부를 지도·감독하고, 그 결과에 대하여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장 추진상황(결과)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고, 이를 관리·비치하여야 함
- 연수생과 선도 농가는 현장실습 교육 동안 각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연수생 또는 선도 농가가 불성실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할 때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 연수생 또는 선도 농가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음
- 약정의 무효·해지·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연수생과 선도 농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지체없이 처리해야 함

약정의 무효·해지·변경 등

- 중대한 허위사실로 약정체결 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지원금액 전체 회수
- 허위연수 적발 시 그 즉시 약정을 해지하며, 해당 월부터 지원비 미지급
-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연수생에 대한 약정금액 미지급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·변경하고 필요 시 추가 약정체결 추진

- 연수생 및 선도 농가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 재약정이 가능하며, 이때 최소 1개월 전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, 연수생과 선도 농가 간 재약정 체결 가능
- 연수생 및 선도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선도 농가·연수생 pool 구축 및 연수생과 선도 농가에 대한 교육 등 추진
- 현장실습 교육장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모든 연수생에게 스마트 기기(휴대전화)를 활용한 「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」을 사용하게 하고 결과를 모니터링하여야 함 ※ <http://hrd.rda.go.kr>

- ※ 연수생은 반드시 「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」을 이용하여 출결 관리를 해야 하며, 연수생 선정 단계에서 시스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연수생 선발
- ※ 단, 시스템 점검, 지역 실정으로 GPS 미작동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해당 일에 한하여 수기 출근부 인정 가능

□ 교육지원비 지급

【 연수생 】

- (지원금액) 월 80만원 한도(5개월간) 지급
- (지원조건) 매월 10일 이상 연수한 경우만 지원하며, 이때 지원비는 1일 8시간 이상 연수한 일자에 비례하여 지급
 - ※ 월 10일 미만 연수 시 해당 월 교육 지원비는 지급하지 않음
 - ※ 1일 지급단가(8시간 기준): 4만원(교통비, 식비 등 포함)
- (1일 교육 시간 한도) 8시간
- (신청 방법) 연수생은 교육훈련 후 매월 단위로 현장실습보고서를 시스템에 등록 후, 출근부(사본), 입금받을 통장 사본을 첨부한 교육지원비 청구서를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 제출
 - ※ 최초 신청 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연수약정서도 함께 제출
- (지급 시기 및 방법) 연수생의 월별 현장실습보고서(시스템) 및 제출서류 확인 후 교육훈련비를 연수생의 명의의 계좌에 입금
 - ※ 출석 및 연수일·시간 확인은 「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」을 통해 확인

【 선도농가 】

- (지원금액)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(5개월) 지급
 - ※ 연수생이 2명일 경우 연수생 각각 계산하여 월 80만원 한도로 지급 가능
- (지원조건) 지원비는 연수일에 비례하여 지급하며, 선도 농가는 연수생에게 현장실습에 필요한 실습 포장과 그에 따른 재료를 제공하는 조건임
 - ※ 단, 실습 포장에서 나온 결과물은 선도농가의 소유물로 함
 - ※ 1일 지급단가(8시간 기준): 2만원(식비, 실습재료비 등 포함)
- (신청 방법) 선도 농가는 교육훈련 후 매월 단위로 현장실습보고서를 시스템에 등록 후, 입금받을 통장 사본을 첨부한 교육지원비 청구서를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 제출
 - ※ 최초 신청 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연수약정서도 함께 제출

- (지급 시기 및 방법) 월별 현장실습보고서(시스템) 및 제출서류 확인 후 교육지원비를 선도 농가 명의의 계좌에 입금
 - ※ 출석 및 연수일·시간 확인은 「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」을 통해 확인

제재조치

- 중대한 허위사실로 약정체결하여 약정 무효된 자 또는 허위연수 적발 등으로 약정 취소된 자는 추후 사업대상에서 영구제외
-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(연수생 및 선도농가) 선발 또는 실습 교육 시작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 참여를 포기하는 연수생 또는 선도농가는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당해 사업대상에서 제외

연수생 사후관리

- 현장실습 교육 종료 후 2년간 수료생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·비치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함
 - ※ 사후관리내용: 귀농 여부, 영농종사 현황 등

VII. 기대 효과

-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한 체계적인 기초영농교육 지원으로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
- 신규농업인 능력 배양 및 정착 지원으로 농촌인력 확보 및 농업활성화 도모

【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참고서식】

< 목 차 >

- (붙임 1) 선도농가 선정기준(안)
- (붙임 2) 연수생 선정기준(안)
- (붙임 3)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
- (붙임 4)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(시스템 입력)
- (붙임 5)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
- (붙임 6)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
- (붙임 7) 선도농가 학습지원 계획서(시스템 입력)
- (붙임 8) 보안서약서

선도농가 선정기준(안)

| 평가항목 | 배점 | 평점 | 비고 |
|--|-----|----|----|
| ○ 연수시행 기반 및 수행능력 - 동일 또는 유사사업 수행경험 * 고용부 농산업인턴제, 농식품부 WPL 등 - 농촌진흥사업 시범교육장 및 교육이수실적 - 영농규모 및 관련분야 기술보유 현황 * ICT(정보통신기술) 활용 시설 등 - 실습포장, 교육장 위치 및 효율성, 교재 등 구비여부 | 30 | | |
| ○ 연수계획의 적절성 및 실효성 - 연수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- 월별 실습내용의 실천 가능성 - 연수 후 사후관리 및 기대효과 | 40 | | |
| ○ 기타여건 - 농업기업, 유관기관 등 연수 관련 협력 수준 - 작목반, 타 농가와의 협력 및 참여도 - 관련분야 자격증 보유 여부 - 현장실습 코칭 및 지도계획(시스템 활용 등) - 여성농업인 여부 | 30 | | |
| 합 계 | 100 | | |
| 종 합 의 견 | | | |
| | | | |

연수생 선정기준(안)

| 구분 | 평가항목 | 평가 및 배점기준 | 점수 |
|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|
| 계 | 100점 | | |
| 신청자 자격 (40점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청자 연령(10) ○ 본인 포함 가족 수(10) ○ 귀농 후 농촌거주기간(10) ○ 2025 청년영농정착 지원 사업 신청(5) ○ 여성 또는 부부참여(5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만 30세 이하(10), 31~40세(7), 41~50세(5), 51~60세(3), 61세 이상(1) ○ 4명 이상(10), 3명(7), 2명(5), 1명(3) ○ 3년이상(10), 1~2년(7), 1년 미만(5) ○ 신청자(5), 미신청자(0) ○ 여성 또는 부부참여(5), 그 외(0) <p>※ 증빙서류: 주민등록 관련자료(주소이력 포함)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) () () () () |
| 귀농교육 (15점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귀농교육 이수시간(15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00시간 이상(15), 71~99시간(10), 51~70시간(5), 21~50시간(3), 20시간 이하(1) <p>* 사이버교육은 수료시간의 50% 인정</p> <p>※ 증빙서류: 교육수료증 등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) |
| 사업규모 (10점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지보유 및 임차규모(5) ○ 농업시설 및 임차규모(5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지 6,000㎡, 대가축 2두 이상(5) ○ 농지 6,000㎡, 대가축 2두 미만(3) ○ 하우스 등 농업시설 1,500㎡ 이상(5) ○ 하우스 등 농업시설 1,500㎡ 미만(3) <p>* 임차농지 및 시설 포함</p> <p>※ 증빙서류: 농지원부 등 관련증빙자료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) () () |
| 사업계획 (20점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계획 수립(10) ○ 시스템 활용의지 및 사업화 방안(10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수(10), 보통(7), 미흡(5) ○ 우수(10), 보통(7), 미흡(5) <p>※ 증빙서류: 사업계획서(시스템활용계획 등)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) () |
| 기타여건 (15점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청자 영농 및 사업 의지(10) ○ 마을주민과 화합 및 마을기여도(5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수(10), 보통(7), 미흡(5) ○ 우수(5), 보통(3), 미흡(1) <p>※ 증빙서류: 자율양식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) () |

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--------|
| 신청자 | (성명) | (생년월일) | |
| ①연 령(만) | | ②(이주 전) 거주지 | 예) 경기 수원 |
| ③기 이수 귀농 교육 과정명 | 예) 농촌진흥청 제대예정군인 귀농교육('19) | | |
| 현 주소지 | | | |
| 연 락 처 | | 이메일 주 소 | |
| ④연수희망작목 | (주작목) | (부작목) | |
| ⑤연수희망지역 | (최우선 지역) | (우선 지역) | (차선 지역) |
| ⑥연수희망기간 | | | |
| ⑦자기소개 및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유 | | | |
| ⑧만 40세 미만의 경우 | 농식품부 2025년도 「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」 신청사실 여부 |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신청 | |
| ⑨기타 특이사항 | | | |
| ⑩개인정보 이용동의 | 상기 본인은 서귀포농업기술센터의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관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 | | |
| ⑪추천기관 확인란 | (소속) | (직위) | (성명) (인) |

본인은 2025년도 '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' 연수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신 청 일: 2025년 월 일
 신 청 인: (인)

별첨: 작성 시 유의사항(뒷면)

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작성요령

- ① 연 령(만):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
 - ② (이주 전) 거주지: 귀농 전에 거주했던 지역을 간략하게 기재
 - ③ 기 이수 귀농교육 과정명: 우선순위 선정 시 활용, 해당 시군은 필요 시 귀농 교육 기관에 사실 여부 확인
 - ④ 연수희망작목: 연수를 희망하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
 - ⑤ 연수희망지역: 연수를 희망하는 지역을 순차적으로 읍·면 단위로 기입
- 희망 선도농가(농업법인)가 있을 시 기재 가능
 - ⑥ 연수희망기간: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3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 수로 표기하되, 연수 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(예시: 3월~12월)
 - ⑦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유: 선도농가와 의 약정체결 시 판단 근거로 활용하는 내용이므로 구체적으로 기술(별지 사용 가능)
 - ⑧ 만 40세 미만의 경우: 농식품부 2025년도 「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」 신청 사실 여부에 반드시 체크
 - ⑨ 기타 특이사항: 선도농가에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
 - ⑩ 개인정보 이용동의: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 여부
 - ⑪ 추천기관 확인란: 신청지역 시·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귀농 총괄부서에서 연수신청서 사전 확인·보완 후 추천 가능
- *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

[붙임 4]

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(시스템입력)

□ 연수개요

| 시군명 | 연수생 | | 선도농가 성명(예상) | 현장실습기간 (희망기간) | 희망 연수작목 |
|-----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| 성명 | 귀농연월 | | | |
| | | ex)2022. 3 | | ex)4.1~9.30 | |
| | | | | | |

□ 현장실습교육 동기(목적)

□ 현장실습교육을 통해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(3가지 이상)

【농업기술, 사업화기술, 사업마인드, 관계강화 등】

-
-
-
-

□ 선도농가에게 바라는 점

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작성요령

- ① 신청자: 농업인은 성명과 생년월일, 농업법인은 명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
 - ② 연수가능작목: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 기입
 - ③ 연수가능지역: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기입
 - ④ 연수가능기간: 연수가능기간을 최소 3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 수로 표기하되, 연수 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(예시: 3월~12월)
 - ⑤ 자기소개: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 근거로 이용되므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되, 영농 규모, 영농경력, 매출액 등을 상세히 기재(필요 시 별지에 작성 가능)
 - ⑥ 현장실습 연수 운영계획 요약: 현장실습교육의 연수 과정 및 연수 방법 등을 기재 하되, 별첨의 운영계획서를 요약하여 기입
 - ⑦ 기타 특이사항 : 연수에 있어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
 - ⑧ 개인정보 이용동의: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 여부
 - ⑨ 확인란: 도농업기술원장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수시행자(선도농가) 후보자를 확인 시 후보자의 자질과 소양, 영농기술 수준, 연수 관련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함
- *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

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작성요령

- ① 신청자: 농업인은 성명과 생년월일, 농업법인은 명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
- ② 연수가능작목: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 기입
- ④ 연수가능기간: 연수가능기간을 최소 3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 수로 표기하되, 연수 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(예시: 3월~12월)
- ④ 영농규모 및 기술보유 현황: 연수생이 선도농가를 선택하는 판단 자료로 이용되므로 구체적으로 작성
- ⑤ 교육의 주요 내용 및 목표: 연수생에게 제공하는 연수 내용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
- ⑥ 월별 실습사항: 연수가능기간 내에 월별로 진행할 주요 현장실습사항 기재
- ⑦ 실습 기대효과: 연수가능기간 내에 현장실습 수행 시 기대되는 영농기술 및 경영 능력 향상 등을 기재
- ⑧ 확인란: 도농업기술원장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선도 농가 후보자의 운영계획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, 필요 시 선도농가 후보자와 협의·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

*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

[붙임 7]

선도농가 학습지원 계획서(시스템 입력)

| 구 분 | 주 요 내 용 | | | | | | | | 기타 사항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|
| 개 요 | 시군명 | 선도농가 | | 연수생 성명 (예상) | 연수희망기간 | | 연수 지원 작목 | | |
| | | 성명 | 영농연월 | | 시작일 | 종료일 | | | |
| 핵심 생산기술 | | | | | | | | | |
| 경영· 유통 및 창업 | | | | | | | | | |
| 농촌적응 노하우 | | | | | | | | | |
| 견학· 지인 소개 | | | | | | | | | |
| 기대효과 | | | | | | | | | |

